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0571
등록일자	2015.6.18.
결재일자	2015.6.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진	옥미정	김효길	06/19 김창현		
협조자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보건과장	박선옥 오응재 김영수	보육지원과장	홍경일	



MERS 격리자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계획



- 기 간 : 2015. 6. 19(월) ~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 대 상 : MERS입원·병원격리자 가구원 중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도움신청⇒ 복지부희망복지지원단 배부⇒구 담당부서 전화상담·신청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주 보호자가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2015. 6. .

강 남 구
(복 지 정 책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20px;">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3237(2015.6.17.)</p>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style="padding-left: 20px;">MERS 격리자 복지서비스 지원</p>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20px;">MERS 격리자</p>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20px;">해당없음</p>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20px;">해당없음</p>																											

MERS 격리자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계획

MERS 입원·격리대상자 가구 중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로 식사지원, 가사지원, 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MERS 입원·격리대상자 가구 중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 식사지원,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근거 : MERS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계획(안)
보건복지부-3237(2015.6.17)

2 지원개요

- 대상자 : MERS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
 -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이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방법 : 격리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부재상황임을 감안하여 유선상담·신청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격리해제 후 보완
 -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도움신청 → 희망복지지원단 분류·배부 → 시군구 복지서비스 담당부서에서 전화상담, 신청

* 「복지로」에 접수된 메르스 격리자 돌봄서비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

- 신규 격리자가 병원·보건소 등을 통해 정보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구 긴급복지 담당자가 유선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복지지원단에 송부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
 - * 사업별 소득·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별 지침은 별첨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돌봄지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 등하원(등하교) 지원
		•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안부확인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필요 서비스 연계
	식사지원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지방이양)
	가사지원	•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학교휴업중인 학생, 보호자 격리 수급자)
		• 활동지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활동지원

3 행정사항

□ 빠른 정보공유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히 지원

- (희망복지지원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담당부서에 배부, 상담 실적 및 처리결과를 붙임7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에 보고

- (보건소) 신규 격리자 정보공유 동의 확인
- (지원부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배부된 민원을 최장 2일 이내 처리하고, 매일 15시까지 결과를 붙임7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희망복지지원팀에 제출

- 붙임 1. 아동지원서비스 지원
2.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3. 노인지원서비스
 4. 장애인 활동지원
 5. 격리자 가구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질문지
 6. 격리자 조사 결과 통보 서식
 7. 일일보고 서식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아동권리과 윤재규주무관, 044-202-3436)

- (지원대상) 메르스(MERS)관련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확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방식) 시·군·구에서 기존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지원
- (제공서비스)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등 맞춤형 급식지원
- (지원기간) 보호자의 메르스 격리해제 시까지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지원

(아동권리과 임동민사무관, 044-202-3432)

- (지원대상) 메르스(MERS)관련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기존) 취약계층 아동 등 우선보호아동 이용 →
(확대) 보호자 격리 등 돌봄 필요아동 우선보호아동으로 선정

- (지원방식) 정원 및 우선보호아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지원
- (제공서비스) 학습, 보호 및 급식제공 등 방과후 돌봄
- (지원기간) 보호자의 메르스 격리해제 시까지

붙임2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회서비스사업과 김인철사무관, 044-202-3224)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만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이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 |
|--|
| ① 1~3급 장애인 |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메르스(MERS)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하여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장애인(1~3급), 만성질환자 등>

* 아이돌봄지원 및 긴급가족돌봄 사업(여성가족부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서비스 가격

- (기존) 소득수준에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28,000원	월 228,000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10,480원	월 17,520원
월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원	월 247,050원	월 9,450원
	차상위계층		월 236,790원	월 19,710원

- (메르스 관련) 월 27시간 범위내에서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시군구는 돌봄인력 배정까지 완료할 것

□ 지원기간

- 서비스 신청일부터 퇴원 또는 격리해제일까지

1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정책과 김수영사무관, 044-202-3460)

- (대상자) 가구원이 메르스로 인해 병원 격리됨으로써 **자택에 혼자 거주하게 된 노인**
 - * (기존)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질병, 사회적 고립 등 취약 독거노인 → (확대) 병원 격리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중 혼자 있는 노인까지 확대
- (제공서비스) 주 1회 어르신 댁 방문 및 주 2~3회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등 지원**
 -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식료품 키트·비타민c 등을 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지원할 계획
- (서비스 제공방법) **대상자 발굴** → 시·군·구 돌봄담당자는 돌봄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 서비스 제공 요청 → 수행기관은 담당 생활관리사를 배정하고 안부확인 및 식료품 키트·비타민 지원
- (서비스 기간) **병원 격리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 * 아이돌봄지원·긴급가족돌봄 사업(여성가족부 지원)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②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노인정책과 서종원사무관, 044-202-3453)

- (대상자) 메르스로 인한 병원 격리로 인해, 격리대상자 가구 중 자택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독거노인, 노인부부)
 - * (기존)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및 중증질환 수술한 독거노인(만 65세이상) 또는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 (확대) 병원 격리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만 65세이상) 또는 노부부(만 75세이상)가 있는 경우
 - (제공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지원(월24시간범위 내)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가정 방문서비스 주기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주 2~3회 초과 가능
 - (본인부담)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여 처리)
 - (서비스 제공방법) 대상자 발굴 → 시군구청 돌봄담당자는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기관(돌봄센터 등)에 어르신 서비스 제공 요청 → 제공기관은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하고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 * 기타 모든 처리는 단기가사서비스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 시군구는 돌봄인력 배정까지 완료할 것
- (서비스 기간) 격리대상자의 병원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받고있는 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붙임4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신재귀사무관, 044-202-3341/이영우주무관, 044-202-3345)

□ 제공내용 (대상 : 1~3급 장애인)

- 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 17~18)
- 수급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어 자택격리된 경우 허용

현행	확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 도서·벽지지역 외에 지자체 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좌동 ○ 좌동 ○ 좌동 - (추가) 수급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된 경우

- ② 긴급활동지원 제공대상 확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 20)
- 1~3급 장애인중 비 수급자, (월 한도액 : 834,000원)

현행	확대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좌동 (추가) 보호자가 메르스에 의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시군구는 돌봄인력 배정까지 완료할 것

- ③ 학교휴업에 의한 장애인 학생 추가급여 확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 12)
- 기 수급자 중 학생의 경우 학교휴업시 가정(생활)보호시간 증가 예상에 따라 추가 급여 제공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월 20시간, 176천원) 제공
- ④ 이용자의 보호자가 메르스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추가급여 확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 12)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사항으로 인정하여 추가 급여(월 20시간, 176천원)제공

- MERS 병원격리자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드리기 위한 설문지 입니다.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이거나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로서, 자택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어르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담당 지자체에서 연락드려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 추후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거주지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3.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정보 : 명

연번	성명	격리자와의 관계	연락처	생년월일	취업 여부	취학여부 (어린이집/ 유치원포함)	격리 여부	도움 필요 여부
1								
2								
3								
4								
5								

4. 가정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 :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장애인(), 노인(), 기타()

없음

⇒ “없음”인 경우 설문종료. “있음”은 계속 질문.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본인의 집 친인척 집 기타()

①-1. 본인의 집에 있다면, 가정에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 (격리자와의 관계 :)
 없음

①-2. 친인척집에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이 가능한 친인척 성명/연락처/주소를 적어주세요.

--

② 본인의 집 또는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지원	•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input type="checkbox"/>
	돌봄지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등하원(등하교) 지원	<input type="checkbox"/>
		•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	안부확인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필요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식사지원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지방이양)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	•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 활동지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작성)			

